

평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안 번호	37
----------	----

제안년월일 : 1998. 11. 10.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4년마다 군수가 작성, 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보건의료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평창군 지역주민의 책임적인 보건의료 시행을 위해서 질병의 치료는 물론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보건의료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 주민의 절실한 요구인 2차급 의료기관의 필요성 대두와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의 제반시설 확충 및 인력수급이 요구되며,
- 특히, 이미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방치와 무책임 속에 있는 노인성 정신 질환자, 재가 및 독거노인환자 등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어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보건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 보건의료원 시설개선 → 2차급 병원역할 수행
 - 지역의료기관 검사센터 기능 수행 → 관내 의료기관 임상병리 검사, 방사선 등 지원
- 포괄적 방문보건사업팀 구축 및 재활치료사업 기능 강화
 - 방문보건사업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연계 및 의료체계 구축
 - 만성질환자들에 대하여 치료적 차원의 보건지식과 행태변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강화

- 시설 및 장비개선 총 사업비 ----- 5,180,000천원
 - 시설개선사업 : 보건의료원 증축 및 지소신축 등 9개사업 - 4,400,000천원
 - 의료장비개선사업 : 필수의료장비(마취기 등 21종) ----- 780,000천원
- 사업기간 : 1999년 ~ 2002년(4년간)

3.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3조및동시행령제5조
 -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① 시·도지사는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로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발췌분)

- 1999년 ~ 2002년 계획 -

1998. 9.

평 창 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 일반적 목표

평창군 지역주민의 책임적인 보건의료 시행을 위해서 질병의 치료는 물론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보건의료관리 체계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주민의 절실한 요구인 2차급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군내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이 분명히 제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제반시설 확충 및 인력수급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미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방치와 무책임속에 있는 노인성 정신질환자, 재가 및 독거노인환자 등의 대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우리군의 과제요 목표다.

○ 세부 목표

○ 보건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 보건의료원 시설개선(증축 583평→914평)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인력을 보강하여 2차급 병원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환자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병원으로서의 규모 확대

- 지역의료기관 검사센터 기능 수행 ⇒ 관내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한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 지원

○ 포괄적 방문보건사업팀 구축 및 재활치료사업 기능 강화

- 방문보건사업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연계 및 의료체계구성

(자원봉사자)

☞ 보건의료원, 장애인복지관 -----> 지역단위로 포괄적인 방문보건사업 (진료, 예방및보건사업, 재가환자관리, 재활사업, 생활개선사업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

- 만성질환자들에 대하여 치료적 차원의 보건지식과 행태변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강화

□ 세부사업 추진계획

①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

사업명	사업대상 ('97기준)	추진계획
영유아보건사업	3,282명	영유아 등록관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방접종, 건강검진사업등에 대한 완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보건사업	7,266명	각종 보건교육 프로그램은 시청각위주로 개발하도록 학교(초등학교) 체질검사 지원과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한다.
성인보건사업	13,400명	성인병 건강검진을 위하여 출장검진반을 편성 운영하고(예산액 : 2억원, 소요인력 : 7명, 운영일시 : 2,000년) 검진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홍보,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모성보건사업	4,536명	임산부의 정밀검사나 고위험임산부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연계 추진하고, 등록후 실질적인 추후관리가 되도록 힘쓴다.
노인보건사업	6,016명	거동불능자나 독거환자등에 대한 1일노인병원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건강진단으로 건강유지에 관심을 갖게하며, 봉사활동팀과 연계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

② 서비스별 보건사업

사 업 명	사업대상 ('97기준)	추진계획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97,611명	원내 건강증진팀을 구성하여 자체 전문교육반을 운영하고 교육 홍보에 필요한 자료개발과 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영양개선사업	7,072명	주인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양지도가 되도록하며, 영양정보 및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리플렛, 소책자, 전단 등을 제작 배포한다.
구강보건사업	6,220명	효과적인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조사를 실시하고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공동참여하는 학술 집담회를 개최하여 치면열구전색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382개소 17,375명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하여는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하고 각종 사업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근절토록 한다.
의약품관리사업	183개소	연4회 이상 지도점검(자율지도)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행위와 우수약품 공급에 앞장서며, 의료취약지구는 월1회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토록 한다.
정신보건사업	22명	보건의료원 증축으로 수용시설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중보건 의사(정신과 전문의)배치와 간호사의 정신간호 전문교육 이수토록 추진한다.

재활보건사업	3,095명	지역대표 주민과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여 정확한 사업 대상자를 파악하고 장애인복지관과 연결 재활전문 의사 및 방문 물리치료사의 참여를 확대한다.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사업	7,289명	대상자들에게 월1회 가정방문을 시행토록하고 이동보건 지소와 이동순회진료를 활성화하여 후속관리를 철저히 하며, 만성퇴행성 위험인자에 대한 홍보사업을 강화한다.
방문보건의료사업	714명	포괄적 방문보건팀을 재구성하여 복지과와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환자 후속 관리체계가 되도록 유지한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1,570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를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조직진단 실시후 결과에 의해 추진계획 설정
공중보건 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23,989명	공중보건 의사 및 보건진료원의 질적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임상집담회 개최와 복무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하고 체계화된 보건교육 습득 기회를 마련해준다.
각종실험 및 검사	23개소/ 47명	전염병발생예방을 위해 보건자 색출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정보교환 및 모니터 기능을 유지하며 검사결과의 질적향상을 위해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③ 진료사업

사업명	실적('97)	추진계획
진료사업	-외래진료 : 179,430건 -입원 : 291건 -수술 및 처치 : 850건 -분만 : 12건 -응급실: 2,91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원 시설개선(증축 583평 ⇒ 914평) 및 개보수로 입원실, 응급실, 수술실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성정신질환자, 재가환자 수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 99년부터 마취과 전문의 고정 배치로 수술 및 분만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하며,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는 대로 정신과 전문공보의를 배치하고, 정신질환자(치매, 알콜중독) 관리를 시작한다. · 보건의료원 운영의 필수인력인 약사 및 간호사는 결원을 보충하여 99년까지 해결한다.

□ 의료보장 인구

의료보장 종류별 인구 - 1997

의료보장 종류	1997년 (%)
지역의료보험	62.6
직장의료보험	9.9
공,교의료보험	23.1
의료보호대상자	4.4
계 (N)	100.0 (48,813)

N = 인구수

※ 자료제공 : 평창군청 복지과, 평창군지역의료보험조합, 강원제4지구직장의료보험조합

□ 의료취약 인구

의료취약 인구(가구).1997

구 분 지역(읍.면)	독거노인수 (명/%)	장애등록자수 (명/%)	의료보호대상자 (명/%)	노인부부세대 (명/%)	소년소녀가장 세대 (명/%)
평 창	73 / 15.3	135 / 22.3	264 / 15.5	46 / 20.8	8 / 13.8
미 탄	33 / 6.9	55 / 9.1	201 / 11.8	11 / 4.9	8 / 13.8
방 림	34 / 7.1	46 / 7.6	211 / 12.4	14 / 6.3	4 / 6.9
대 화	150 / 31.4	88 / 14.6	304 / 17.8	32 / 14.4	9 / 15.5
봉 평	39 / 8.2	63 / 10.4	197 / 11.6	22 / 9.9	10 / 17.2
응 평	26 / 5.4	53 / 8.8	153 / 9.0	15 / 6.7	5 / 8.6
진 부	67 / 14.0	97 / 16.1	246 / 14.4	51 / 23.0	6 / 10.4
도 암	56 / 11.7	67 / 11.1	128 / 7.5	31 / 14.0	8 / 13.8
계 / N	478 / 100	604 / 100	1,704 / 100	222 / 100	58 / 100

N=인구수

※ 자료제공 : 평창군청 복지과

□ 의료이용 현황

○ 전체 보건의료기관 이용

입원 및 외래환자의 평창군내 의료기관 이용 - 지역의료보험

구 분	외 래 (명/%)	입 원 (명/%)	진료비 (백만원/%)
평창군내 이용	89,347 / 73.5	107 / 3.7	1,553 / 25.5
타지역(시.군.구) 이용	32,199 / 26.5	2,783 / 96.3	4,534 / 74.5
계	121,546 / 100.0	2,890 / 100.0	6,087 / 100

* 자료제공 : 평창군 지역의료보험조합, 1997

□ 보건의료원 인력의 업무별 투입시간 비율현황

업 무 명	투입 인력 (명)	비율 (%)	업 무 명	투입 인력 (명)	비율 (%)
1. 영유아보건사업	1.62	1.780	18. 방사선 검사	1.85	2.033
2. 학생보건사업	1.18	1.297	19. 가족계획업무	1.05	1.154
3. 성인보건사업	1.91	2.099	20. 진료업무 (일반진료,치과진료,입원실운영)	16.87	18.538
4. 모성보건사업	2.04	2.242	21. 조제업무	5.71	6.275
5. 노인보건사업	1.72	1.890	22. 건강진단업무	0.94	1.033
6. 건강증진·보건교육	2.71	2.978	23. 보건증발급업무	0.40	0.439
7. 영양개선사업	0.21	0.231	24. 민원접수업무	2.49	2.736
8. 구강보건사업	0.98	1.077	25. 문서관리(보건통계실적 포함)	3.56	3.912
9.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4.43	4.868	26. 예산 및 재무관리	3.91	4.297
10. 의약물관리사업	1.59	1.747	27. 비품관리	1.18	1.297
11. 정신보건사업	0.41	0.451	28. 전산관리	0.36	0.396
12. 재활보건사업	0.58	0.637	29. 일반행정(서무)	3.45	3.791
13.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2.45	2.692	30. 보험청구업무	3.91	4.297
14. 방문보건사업	6.52	7.165	31. 운전,청소,보일러,시설관리등	8.29	9.110
1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	32. 기타업무	6.34	6.967
16. 공중보건 의사 및 보건 진료원 지도·감독	0.99	1.088			
17. 각종실험 및 검사(임상 병리)	1.35	1.483	합 계	91	100.0

□ 5대 주요사망 원인 비교

5대 주요사망원인 비교, 1995

(단위 : %)

구 분	전 국		강원도		평창군	
전 체	뇌혈관질환	19.1	뇌혈관질환	21.1	뇌혈관질환	21.0
	교통사고	7.6	교통사고	8.7	교통사고	10.3
	위암	5.6	간경변	5.6	간경변	7.9
	간경변	5.3	위암	4.7	간암	3.4
	간암	4.5	간암	3.7	위암	3.0
65세미만	교통사고	14.2	교통사고	16.2	교통사고	19.1
	뇌혈관질환	10.1	뇌혈관질환	10.8	뇌혈관질환	14.6
	간경변	8.8	간경변	9.7	간경변	7.6
	간암	6.5	간암	5.4	간암	5.5
	위암	5.6	위암	4.8	위암	4.0
65세이상	뇌혈관질환	26.5	뇌혈관질환	29.4	뇌혈관질환	29.6
	위암	5.6	위암	4.7	교통사고	3.7
	당뇨병	4.5	당뇨병	3.7	위암	3.4
	기도기관지.폐암	4.2	기도기관지.폐암	3.5	당뇨병	3.0
	천식	4.0	천식	3.2	간경변	3.0

주요 수명상실 사망원인 비교

(단위 : %)

순위	전국		강원도		평창군	
1	교통사고	22.1	교통사고	24.2	교통사고	26.5
2	간경변	7.2	간경변	8.2	간경변	9.9
3	뇌혈관질환	6.0	뇌혈관질환	6.4	자기상해	8.6
4	자기상해	6.0	자기상해	6.1	상기도 감염	8.0
5	다른 불의의사고	5.0	다른 불의의사고	4.6	뇌혈관 질환	4.7

□ 평창군 공무원 건강진단 통계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평창군 공무원(일반직)
- 조사인원 : 490명
- 조사방법 : '98공무원건강진단 결과표 분석

○ 조사결과

평창군공무원 건강진단 통계. 1998

(단위 : 명, %)

구분 질병별	계	평 창	미 탄	방 립	대 화	봉 평	용 평	전 부	도 압
총검진 인 원	490	239	32	31	39	36	18	57	38
간질환	121 (24.7)	55 (23.0)	8 (25.0)	4 (12.9)	10 (25.6)	11 (30.5)	2 (11.0)	20 (35.1)	11 (28.9)
고혈압	48 (10.4)	19 (7.9)	4 (12.5)	2 (6.5)	3 (7.6)	6 (16.7)	1 (5.6)	9 (15.8)	4 (10.5)
당 뇨	24 (4.9)	10 (4.2)	-	-	1 (2.6)	4 (11.1)	1 (5.6)	5 (8.8)	3 (7.9)
고지혈	22 (4.5)	19 (7.9)	2 (6.3)	-	1 (2.6)	-	-	-	-
폐결핵	7 (1.4)	3 (1.2)	-	1 (3.2)	-	-	1 (5.6)	1 (1.7)	1 (2.6)
신 장	16 (3.3)	9 (3.7)	1 (3.1)	1 (3.2)	1 (2.6)	1 (2.8)	-	1 (1.7)	2 (5.3)
폐종양	1 (0.2)	1 (0.4)	-	-	-	-	-	-	-
질환자 (유병율)	206 (42.7)	102 (42.7)	13 (40.6)	5 (16.1)	13 (33.3)	19 (52.8)	4 (22.2)	31 (54.4)	19 (50.0)

* 중복 질환을 감안한 통계임.

□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

구 분	지 역 사 회 진 단 결 과 분 석
보건의료 수요측면	<p>□ 기존자료를 통한 분석</p> <p>○ 지역의료보험 군내 의료기관 이용 및 급여실적</p> <p>- 관내 97년도 외래 발병환자수(지역의료보험) 총121,546명으로 관내 의료기관 이용자는 89,347(이용률73.5%)이나 입원환자(지역의료보험)는 총 2,890명으로 이중 107명(3.7%)만이 관내의료기관을 이용하고 2,783명(96.3%)이 타 지역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총 진료비는 군내 수입이 1,553,400,000원 타지역으로는 4,534,191,000원이 지급되었다.</p> <p>□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분석 : 사망률, 음주행태, 공무원건강진단</p> <p>○ 노인성 정신질환 및 재가 환자 관리체계</p> <p>- 평창군 평균 수명은 67.3세(남61.5세, 여73.1세)로 전국 평균수명 71.1세(남67.3세, 여74.9세)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노령인구는 5,016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0.3%(전국평균 5.5%)에 달하는 높은 인구수를 보이며 이에 따른 노인성 질환도 증가추세에 있다.</p> <p>○ 간질환과 음주 문화</p> <p>- 평창군 관내 공무원을 대상(490명)으로 한 건강검진 결과 1위는 간장 질환자가 121명(24.7%)이고 2위는 고혈압 51명(10.4%), 3위는 당뇨 24명(4.9%)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간장질환자는 상대적으로 타 질병과는 달리 높은 유병율을 나타낸다.</p>

구 분	지역 사회 진단 결과 분석
보건의료 공급측면	<p>□ 기존자료를 통한 분석</p> <p>○ 군내 의료기관은 총23개소(보건의료원1, 의원10, 치과6, 한의원6)로 2차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다. 보건의료원이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진한 편이며 특히, 문제시 되는 군내 입원환자 수용능력은 보건의료원의 5병실 13베드 운영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p> <p>□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분석 : 사망률, 음주행태, 공무원건강진단</p> <p>○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성 정신질환(치매), 만성질환으로 인한 재가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군내는 본 환자를 관리할 의료시설이나 수용 시설이 없고 보건요원 및 봉사단체에 의해 일부 혜택을 받는 입장이다.</p> <p>○ 건강검진상 가장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 간장질환자는 대부분이 습관성 알콜중독 범주에 해당되며 2위인 고혈압과 3위인 당뇨병도 음주가 원인이 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평창군 성인 음주율은 전국의 35.5%보다 높은 52%였으며 30대의 남자 음주율은 81.5%, 매일 음주율은 7.6%를 나타내고 있다.</p>

□ 지역사회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 전망

구 분	추 후 전 망
<p>보건의료 수요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를 통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의료 기대수준이 높아가고 군 자치시대를 맞아 군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높은 질적 서비스와 폭넓은 진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입원 수용인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전망 : 사망률, 음주행태, 공무원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젊은 층의 도시이주로 보호자 없이 노인성 정신질환자나 재가환자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실지 보호자가 거주하더라도 질병을 이해하는 지식이 없고 많은 인내를 요하기에 전문의료인력이나 수용 시설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다. ○ 대부분이 건강검진시 간기능을 의심할 정도로 폭주 및 습관적인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간경변과 간암으로 사망하는 빈도가 전국통계와 비교해서 평창군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과 연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p>보건의료 공급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를 통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건상 보건의료원이 궁극적으로 2차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의료시설 확충과 간호사 수급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4시간 운영체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려면 의료원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철폐하고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규정을 두는 것이 지역의료를 활성화 시키는 원칙이다. □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전망 : 사망률, 음주행태, 공무원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성 정신질환 및 재가환자 관리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군 의료 복지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봉사단체의 활성화와 연계를 맺고, 정신과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고 보건의료원내 수용(입원)시설을 확충하거나 군내 사용가능한 건물을 확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 기존 건강검진 방식에서 평창군은 간장질환 만큼은 검사를 폭넓고 정밀화 해야하며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초음파검사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음주문화에 대한 변환 및 적극적인 보건교육 및 홍보가 있어야 한다.

3-2 향후 4년간 역할 변화 및 사업 계획 방향

사 업 명		보 건 의 료 사 업	기 타
기 관 명			
보건의료원	역할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2차의료기관으로 개선 ○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보건사업 항목 위주로 방향 전환 	
	사업계획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도·군비 확보 노력 ○ 인력확보 및 의료수준 향상은 지속적으로 문제점 위주로 해결 ○ 보건사업팀의 재구성과 분야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봉사단체등과 자원조직 구축으로 사업의 활성화 도모 	
보건지소	역할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사업은 민간의료기관이 처리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자, 거동불능환자, 노인질환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건사업의 비중을 높인다 	
	사업계획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장을 방문보건팀에 합류 ○ 보건요원은 전문교육(호스피스, 재활치료, 정신간호등)을 이수시킨다 ○ 보건지소별로 그 지역의 봉사단체와 자원구축요향 	
보건진료소	역할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취약지구이므로 그 지역의 간단한 1차진료의 역할은 계속 수행 ○ 관할지역의 건강관리 모니터 역할이 중요시됨 ○ 형식적인 보건통계 보고는 지양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보건사업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한다. 	
	사업계획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의료지식 및 보건사업 교육을 제공하여 정보부족을 해결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보건계획설립 및 실행에 옮기도록 협조 	

□ 시설 및 장비 개선 계획

○ 시설개선 계획

추진 년도	기관별	시설 / 장비 보강 계획	현황 및 필요성	투 자 계 획 (천원)			
				계	국·비	도 비	지방비
1 9 9	보 의 료 원	○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 - 증 축 : 331평 (583평→914평) - 개보수 : 583평	○ 시설의 협소 및 공간부족으로 미진했던 진료업무 및 보건사업 활성화 기대	2,006,300	1,203,780	501,575	300,945
	미 탄 보건지소	○ 건물 이전신축 : 105평	○ 붕괴위험으로 재난위험시설 D급 지정	451,500	270,900	112,875	67,725
	계 촌 보건진료소	○ 건물 이전신축 : 35평	○ 지역의료시혜 기여도가 높은 보건진료소의 시설 노후 및 면적협소 해결	150,500	90,300	37,625	22,575
소계		3 개 소		2,608,300	1,564,980	652,075	391,245
2 0 0	방 립 보건지소	○ 건물 이전신축 : 105평	○ 시설노후 및 면적협소	451,500	270,900	112,875	67,725
	다 수 보건진료소	○ 건물 이전신축 : 35평	○ 지역의료시혜 기여도가 높은 보건진료소의 시설 노후 및 면적협소 해결	150,500	90,300	37,625	22,575
소계		2 개 소		602,000	361,200	150,500	90,300
2 0 1	도 양 보건지소	○ 건물 이전신축 : 105평	○ 면사무소 건물내 위치로 면적협소	451,500	270,900	112,875	67,725
	마 지 보건진료소	○ 건물 이전신축 : 35평	○ 지역의료시혜 기여도가 높은 보건진료소의 시설 노후 및 면적협소 해결	150,500	90,300	37,625	22,575
소계		2 개 소		602,000	361,200	150,500	90,300
2 0 2	대 화 보건지소	○ 건물 이전신축 : 105평	○ 시설노후 및 면적협소	451,500	270,900	112,875	67,725
	면 운 보건진료소	○ 건물 이전신축 : 35평	○ 지역의료시혜 기여도가 높은 보건진료소의 시설 노후 및 면적협소 해결	150,500	90,300	37,625	22,575
소계		2 개 소		602,000	361,200	150,500	90,300
합계		9 개 소		4,414,300	2,648,580	1,103,575	662,145

○ 의료장비 개선 계획

추진 년도	기관별	시설/장비 보강계획	현황 및 필요성	투 자 계 획 (천원)			
				계	국 비	도 비	지방비
1999	보 건 의료원	○ 보건교육용프로비전 구입	○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에 따른 기본장비 보완	15,000	9,000	3,750	2,250
		○ 필수의료장비 - 마취기의 3종		44,000	26,400	11,000	6,600
		○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 비만도측정기의 3종		21,000	12,600	5,250	3,150
소계		9 종		80,000	48,000	20,000	12,000
2000	보 건 의료원	○ 이동검진차량 및 장비 구입 - 이동검진차량의 3종	○ 성인병 검진사업 실시	200,000	120,000	50,000	30,000
		○ 전문의료장비 구입 - 전자내시경의 2종	○ 병원급 규모의 진료 전문화 실시	68,000	40,800	17,000	10,200
소계		7 종		268,000	160,800	67,000	40,200
2001	보 건 의료원	○ 신규장비 - 면역효소 측정기	○ 진료부문 신규장비	50,000	30,000	12,500	7,500
		○ 노후장비 교체 - 초음파기의 2종	○ 진료부문 노후장비 교체	69,000	41,400	17,250	10,350
소계		4 종		119,000	71,400	29,750	17,850
2002	보 건 의료원	○ 전신단층 촬영기	○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관내에서 2차 의료기관 역할분담	300,000	180,000	75,000	45,000
소계		1 종		300,000	180,000	75,000	45,000
합계		21 종		767,000	460,200	191,750	115,050

▣ 기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 필요성

: 현 보건사업의 업무량이 방대한 반면 각 보건지소에 배치된 1~2명의 보건요원으로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되며 최근 중요시 부각되는 재활보건사업이나 정신보건사업은 현실적으로 보건기관에서 관장하기에는 시설이나 예산배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이나 관련단체와의 연계가 있어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으며 재가환자나 독거노인, 보호대상자관리등은 자원봉사단체의 협조가 필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현 황

① 자원봉사단체 연계

- 교회 : 1단체(회원 25명)
- 성당 : 1단체(회원 30명)
- 재가환자 및 보호대상자 연계
- 사업내용(주1회)

생활환경개선	세탁, 청소, 도배, 목욕, 반찬공급, 이미용서비스
--------	------------------------------

② 장애인 복지 분관과 연계

- 재가환자의뢰
- 사업내용

상 담 치 료	1. 접수 및 재활상담, 2. 물리치료, 3. 정기 상담치료
재 활 사 업	1. 교육사업, 2. 결연사업, 3. 재가서비스

○ 추진계획

① 자원봉사 조직 구축

- 각 면을 단위로 그지역의 봉사단체와 연계를 맺고 재가환자 및 보호대상자 관리협조
- 교회 봉사단체 활용

② 장애인 복지 분관과 협조체계 유지 및 동시사업추진

- 보건요원 및 보건진료원 : 대상자 파악

③ 후원회의 발(후원자 및 봉사자 모집)

●地域保健法(1995.12.29)
法律第5101號全文改正

第1條 (目的) 이 법은 保健所등 地域保健醫療機關의 設置·운영 및 地域保健醫療事業의 連繫性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行政을 합리적으로 組織·운영하고, 保健施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國民保健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①國家는 地域保健醫療에 관한 調査·研究, 情報의 蒐集·정리 및 활용, 人力의 養成 및 資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고,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保健施策의 수립·施行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市·道는 당해 市·道の 保健施策의 추진을 위한 調査·研究, 人力確保, 資質向上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市·郡·區의 保健施策의 수립·施行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支援를 하여야 한다.

③市·郡·區는 당해 市·郡·區의 保健施策의 추진을 위하여 保健所등 地域保健醫療機關의 設置·운영, 人力確保, 資質向上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3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등) ①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地域住民, 保健醫療關聯機關·團體 및 專門家の 의견을 들어 당해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市·郡·區議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할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제출받은 市·道知事は 관할 市長·郡守·區廳長, 地域住民, 保健醫療 關聯機關·團體 및 專門家の 의견을 들어 市·道の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市·道議會의 議決을 거쳐 保健福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保健醫療計劃(이하 "地域保健醫療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 關聯機關·團體등에 대하여 資料提供 및 協力を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機關·團體등은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調整을 권고할 수 있다.

第4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①地域保健醫療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保健醫療需要 測定
2. 保健醫療에 관한 長短期 供給對策
3. 人力·組織·財政等 保健醫療資源의 調達 및 관리
4. 保健醫療의 傳達體系
5. 地域保健醫療에 관련된 統計의 蒐集 및 정리

②第1項에서 規定한 것외에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關聯機關·團體등에 대하여 人力·技術 및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第6條 (地域保健醫療計劃 施行結果의 評價)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 또는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結果를 評價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필요한 경우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第7條 (保健所의 設置) 保健所(保健醫療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8條 (保健醫療院) ①保健所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病院의 요건을 갖춘 保健所는 保健醫療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保健醫療院을 設置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9條 (保健所의 業務) 保健所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서 행하여지

(추 71)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평창군

우 232 - 800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504 / ☎ (0374) 330 - 1117 행정 553
처리부서 : 평창군 보건의료원 과장:유원중 보건행정담당 : 지준철 실무자: 연규완

문서번호 보건 65300 -

시행일자 1998. 11.

발음 내부결재

참조

취급		군 수	
보존		민 살 명	
부군수			
원 장	전 결	지방행정주사	
과 장			
담당자	연규완		협조

제목 지역보건의료심의계획(안) 공고 결과 보고

보건65300 - 1300('98, 10, 11)호와 관련하여 평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였으며 수렴된 주민의견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1998. 10 . 17. - 10. 31일까지(15일간)
2. 장 소 : 보건의료원계시판및 읍,면계시판
3. 공고결과 : 주민의견 없음.

붙 임 : 읍,면 공고결과 각1부 끝.

평 창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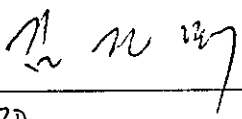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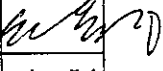
우 232 - 800 평창군 평창읍 증부리 504 / ☎ (0374) 330 - 1117 행정 553
 처리부서 : 평창군 보건의료원 과장:유원중 보건행정담당 : 지준철 실무자: 연규완

문서번호 보건 65300 - 170t

시행일자 1998. 10. 11 .

받 음 받는곳참조

참 조

취급		원 장
보존		
원 장	전 결	
과 장		
담 당	지준철	
담당자	연규완	
		협조

제목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 1, 지역보건법 제3조및 동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다수의 주민의 의견이 수렴 될수 있도록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 2, 읍,면장은 공고 기간중 공고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후 공고게시문 사진(3×5)을 첨부 하여 '98, 11, 3일 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 부

2. 평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부



평 창 군 수

받는곳 : 도 (1 - 8)



평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예고

공고 제 98-309 호

평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8. 10. 17.

평 창 군



1. 공 고 명 : 평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계획수립 취지

지역보건법 제3조및 동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보건의료혜택을 부여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업무 수행

3. 주요내용 : 평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의견제출

본 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98,10,30.까지 평창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374) 330 - 1117 평창군보건의료원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등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우 232 - 800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4 / ☎ (0374) 330 - 1117 행정 553
 처리부서 : 평창군 보건의료원 과장:유원중 보건행정담당 : 지준철 실무자: 연구완

문서번호 보건 65300 -

시행일자 1998. 10.

받 음 내부결재

참 조

취급		군	수
보존		신 지 137	
원 장	전 결		
과 장	유원중	보건행정주사 APZK	
담당자	연구완		
		협조	

제목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합니다.

1. 일 시 : 1998. 10 . 15(목) 11:00시
2. 장 소 : 평창군청 소회의실
3. 참석위원 : 11명(별첨)
4. 심의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의
5. 심의결과 : 계획안대로 확정

- 붙 임 : 1. 참석자명부 1부
2. 심의결과 1부
 3. 회의록 1부 끝.

평 창 군 수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심의결과서

구 분	직 위	성 명	심 의 결 과		비 고
			가	부	
위 원 장	부 군 수	김 재 군	김재군		
위 원	국민의료관리공단 평창지사장	박 용 태	박용태		
	의 사 회 장	하 명 진			
	약 사 회 장	윤 석 두	윤석두		
	한 의 사 회 장	손 수 익			
	농업경영인연합회장	김 세 기			
	평창읍면영회장	윤 영 일	윤영일		
	미탄면면영회장	전 용 재	전용재		
	방림면면영회장	김 창 기	김창기		
	대화면면영회장	조 화 순			
	봉평면면영회장	곽 영 성			
	용평면면영회장	김 증 철	김증철		
	진부면면영회장	홍 성 일			
	도암면면영회장	안 승 준	안승준		
	기 획 실 장	신 대 송	신대송		
	보건의료원장	김 진 백	김진백		
	보건사업과장	유 원 중	유원중		

평 창 군

우 232 - 800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504 / ☎ (0374) 330 - 1117 행정 553
 처리부서 : 평창군 보건의료원 과장:유원중 보건행정담당 : 지준철 실무자: 연규완

문서번호 보건 65300 - 1262

시행일자 1998. 10. 10 .

받 음 받는곳참조

참 조

취급		군 수
보존		
부군수	지정	평
원 장	김세영	자치행정과장 이(20시)
과 장	유원중	서무담당 김(20시)
기안	연규완	보건행정담당 유원중
		협조

제목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1998, 10, 15(목) 11:00시
2. 장 소 : 평창군청 소회의실
3. 대 상 :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17명
4. 내 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심의.



평 창 군 수

받는곳 : 위원 17명.